* 2017 절대강자 전산세무2급 교재 백데이타 기출문제

회사코드 6920 (주)대흥

[1] 다음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2017년 1기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본 문항에 한하여 (주)대흥의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가정하며, 임대료 수익에 대하여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전표입력은 생략한다.(3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표기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51-3 1동 2층 202호					
토 지	지 목	대			면 적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	사무실	면 적	33㎡
임대할부분	전체				면 적	

2. 계약내용

제1조 (목적)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金 10,000,000 원정	
계약금	金 1,0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	(인)
중도금	金 원정은 년 월 일에지불하며	
잔 금	金 9,000,000 원정은 2017 년 06 월 01일에 지불한다.	
차 임	金 1,000,000 (VAT 별도) 원정은 매월 말 일 (선불, 후불)에 지불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년 06월 0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년 05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2017. 05. 01

임대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251-3 2101호					(인)
	사업자등록번호	107-85-51700	전 화		성 명	(주)대흥	
	대 리 인		전 화		성 명		
임차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351-2 1-202					(인)
	사업자등록번호	132-25-99050	전 화		성 명	엘티이	
	대 리 인		전 화		성 명		

회사코드 6220 (주)소망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시오.(월세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자율은 KcLep에 등록되어있는 이자율을 사용한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시 기존 자료는 삭제하고, 월세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을 반영하며, 전표입력은 생략한다)(4점)

- 거래처명 : 나이스상사(거래처코드 501)
- 사업자등록번호 : 312-85-60155
- 용도 : 점포(면적 155m^2)
- 동, 층, 호수 : 1동, 1층, 101호
- 임대기간별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기간	보증금(원)	월세(원)	월 관리비(원)
2016.08.01. ~ 2017.07.31.	10,000,000	1,000,000	50,000
2017.08.01. ~ 2018.07.31.	20,000,000	1,100,000	50,000

회사코드 6820 (주)태풍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3점)

(1) 2016년 8월 1일 물물상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11,000,000원(VAT 포함)은 ㈜미리내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 어음은 2017년 2월 1일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

(2) 외상매출금 중 22,000,000원(VAT 포함)은 대소상회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7년 4월 19일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2009년 1월 3일자로 (주)상신건업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2,200,000원(VAT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7년 3월 17일에 법원의 ㈜상신건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코드 6720 (주)만세공업

[1] 다음 자료를 보고 2017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시오.(3점)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환가일	통화	수출액	기준환율	
						선적일	환가일
히로상사	016-10-09-0115714-2	2017. 8. 20.	2017. 8. 15.	USD	$200,000	₩950/$	₩900/$
LA상사	010-15-15-0466141-3	2017. 8. 22.	2017. 8. 25.	USD	$100,000	₩1,050/$	₩1,060/$
킹덤상사	010-15-15-0613515-0	2017. 9. 17.	-	USD	$200,000	₩1,100/$	-

회사코드 6721 (주)미남기획

[1] 다음은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이다. 동 자료만을 사용하여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에 반영하시오.(3점)

작성일자	매수	내역	공급가액(원)	VAT(원)	특이사항
2017.10.2	1	2,000cc 업무용승용차 구입	21,000,000	2,100,000	
2017.10.4	1	건물철거비용	18,000,000	1,800,000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 위에 있던 노후된 건축물을 취득 즉시 철거한 비용이다.
2017.10.29	1	영업부서 사무용 책상 구입	480,000	48,0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은 2017.11.15.이다.
2017.11.5	1	(주)미래에게서 구입한 제품	8,200,000	820,000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2017.12.5. 교부받았다.
2017.11.8	1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복합기	410,000	41,000	
2017.11.29	1	(주)하머니상회에서 구입한 제품	7,500,000	750,000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은 2017.12.12.이다.

회사코드 6520 (주)한양기업

[1] (주)한양기업은 과세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2기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입력하시오. 단,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0,000원이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있다. 입력된 전표는 무시할 것.(5점)

구 분		2기예정(7월~9월)		2기확정(10월~12월)		전체(7월~12월)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합계	세액 합계
매출	과세	30,000,000원	3,000,000원	70,000,000원	7,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원
	면세	2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공통매입세액		5,000,000원	5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15,000,000원	1,500,000원

회사코드 5820 (주)재인

[1] ㈜재인은 2017년 3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공급가액 1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한편 동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는 총 400,000,0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2017년 1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예정신고시 공급가액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하였다.(단,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작성하시오)(4점)

구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합계
2017년 1기 예정	800,000,000원	1,200,000,000원	2,000,000,000원
2017년 1기 확정	1,000,000,000원	2,000,000,000원	3,000,000,000원
합계	1,800,000,000원	3,200,000,000원	5,000,000,000원

***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신문사와 광고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가정함**

[2] 신문사 및 광고업을 겸영하는 당사는 신문사 및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3월 5일 신문용지(원재료)10,000,000원(세액 1,000,000원) 및 윤전기(유형자산)를 40,000,000원(세액 4,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반영할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내역을'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시오.(3점)

<관련자료> 신문사 및 광고업의 매출내역

기 별	구독료수입	광고수입	총공급가액
2017.1기	10,000,000원	40,000,000원	50,000,000원
2017.2기	24,000,000원	36,000,000원	60,000,000원

[참고] 윤전기 : 인쇄용 기계장치임.
(단, 이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신문사와 광고업만을 운영한다고 가정한다)

회사코드 6020 (주)청용

[1] ㈜청용은 본 문제에 한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다음은 2017년 2기 확정신고기간 (2017.10.1.~2017.12.31.)동안 매입한 면세자료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수량은 편의상 1로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인 구입내역만 반영할 것)(5점)

[자료1] 확정신고기간 구입내역	구분 / 일자 / 상호(성명) /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 / 매입가액(원) / 품명 계산서매입(현금거래) / 10/31 / ㈜세미 / 211-81-87421 / 30,000,000 / 야채 신용카드매입 / 11/24 / ㈜진우 / 101-81-99114 / 80,000,000 / 정육 농어민매입(현금거래) / 12/27 / 김농부 / 510412-1874210 / 15,000,000 / 쌀
[자료2] 공급가액	2017년 2기(7.1.~12.31.)의 음식업 매출과 관련한 공급가액은 500,000,000원(2기 예정 공급가액 : 242,000,000원, 2기 확정 공급가액 : 258,000,000원)이다.
[자료3] 관련자료	・당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면세매입금액 : 184,200,000원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4,200,000원

회사코드 5920 (주)태양

[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신고 기간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등금액합계표(갑)을 작성하시오. 단, ①모든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이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할 것
②전표입력은 생략하고 법인카드번호는 123-45-6789-123(국민법인카드) 이다.(4점)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VAT 포함)	거래처 업종	증빙자료
4월3일	출장목적 항공권	보람항공 (123-81-45672)	김우주	2,200,000원	여객운송 등	사업용 신용카드
4월15일	사무용품 구입	우리문구 (456-06-45672)	김사장	110,000원	소매/문구	사업용 신용카드
5월20일	거래처 접대	차이나타운 (111-22-33332)	홍길동	440,000원	음식업	사업용 신용카드
6월20일	업무용 컴퓨터 구입	컴세상 (222-81-44441)	박영웅	6,600,000원	도소매/컴퓨터 등	사업용 신용카드

* 부가세 가산세 관련

*** 사업자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국세청 전송 ===>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부가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매입처)
- 부속명세서 작성

가산세 구분		세율
사업자 미등록, 허위등록		공급가액 X 1%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지연발급, 부실기재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시)**	**공급가액 X 1%**
	지연수취	공급가액 X 0.5%(2017개정세법)
	미발급, 가공/위장발급 가공/위장수취	**공급가액 X 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전송기한 경과 후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공급가액 X 0.5%**
	미전송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X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7년 세법개정)	지연제출(예정누락->확정신고)	공급가액 X 0.3%
	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미제출(확정누락->수정신고)	공급가액 X 0.5% x 50%(감면-1개월이내)
(2017년 세법개정)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신고불성실	부당무신고/과소신고	미납부세액 X 40%
	무신고	미납부세액 X 20%
	일반과소신고	**미납부세액 X 10% x 50%(감면-6개월이내)**
납부불성실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공급가액 X 0.5% x 50%(감면-6개월이내)**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 X 1%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부실기재		공급가액 X 1%

*** 신고불성실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50%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20%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10%감면
***** 다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등 & 전송누락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누락으로 가산세가 적용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펴 가산세 적용 배제됨

* 가산세 계산 건

사례1) 다음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10,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전송누락하였으며 부가세 신고시 누락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년 365일 가정)
미전송 10,000,000 x 1% = 100,000
신고불성실 1,000,000 x 10% x 50% = 50,000
납부불성실 1,000,000 x 0.03% x 91일 = 27,300

사례2) 다음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 매입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10,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일 전송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누락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5,000,000(VAT별도) - 부가세 신고시 누락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년 365일 가정)
신고불성실 500,000 x 10% x 50% = 25,000
납부불성실 500,000 x 0.03% x 91일 = 13,650

사례3) 다음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 매입 누락>
제품현금매출 8,000,000(VAT별도) - 현금영수증 발급 건, 부가세 신고시 누락
비품매입 후 신용카드 결제 건 7,000,000(VAT별도) - 부가세 신고시 누락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년 365일 가정)
신고불성실 100,000 x 10% x 50% = 5,000
납부불성실 100,000 x 0.03% x 91일 = 2,730

사례4) 다음 1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입누락>
원재료 매입 8,000,000(VAT별도) -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 신고시 누락
승용차 2,000cc 매입 25,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 신고시 누락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년 365일 가정)
신고불성실 - 미납부세액(-) 이므로 가산세 없음
납부불성실

사례5) 다음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5,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후 익일 전송 완료했으나 부가세 신고시 누락
카드 매출 1,100,000(공급대가) 부가세 신고시 누락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매출 1,000,000(공급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후 익일 전송완료 했으나 부가세신고시 누락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년 365일 가정)
신고불성실 600,000 x 10% x 50% = 30,000
납부불성실 600,000 x 0.03% x 91일 = 16,38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1,000,000 x 0.5% x 50% = 2,500

사례6) 다음 1기 예정 부가세신고 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5,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익일 전송 누락하고 부가세신고시에도 누락
현금영수증 매출 1,100,000(공급대가) (익월 전송함)
직수출 5,000,000원

<매입누락>
원재료매입 3,000,000(공급가)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 (년 365일 가정)
지연전송 5,000,000 x 0.5% = 25,000
신고불성실 300,000 x 10% x 50% = 15,000
납부불성실 300,000 x 0.03% x 91일 = 8,19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 5,000,000 x

사례 7) 다음 1기 부가세 신고 시 예정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세금계산서 매출 10,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익일 전송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누락되었음.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증정 (원가 5,000,000, 시가 7,000,000) -> 간주공급에 해당됨

<매입누락>
원재료매입 5,000,000(공급가)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원재료매입 3000,000(공급가) -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미납일수 91일 가정(년 365일 가정)
신고불성실 (1700,000 – 500,000)
1,200,000 x 10% x 50% = 60,000
납부불성실 1,200,000 x 0.03% x 91 = 32,760

사례8) 다음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부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외상매출건 2,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나 미전송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도 누락되었음.
카드매출건 1,100,000(공급대가)
<매입누락>
비영업용 소형승용차(2,500cc) 임차료 5,000,000(공급가)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건
비품매입 1,100,000(공급대가) - 법인카드 매입 건

<가산세> 미납일수 20일 가정(년 365일 가정) 미전송 : 2,000,000 x 1% = 20,000 신고불 : 200,000 x 10% x 50% = 10,000 납부불 : 200,000 x 0.03% x 20 = 1,200

사례9) 다음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제품 현금매출 1,000,000(VAT별도) - 현금영수증 발급
제품 외상매출 5,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익일전송은 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누락)

<매입누락>
원재료 매입 10,000,000(VAT별도)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미납일수 90일 가정(년 365일 가정) 미납부세액이 - 이면 가산세x

사례10) 다음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누락분 자료를 참조하여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매출누락>
제품매출 2,200,000원(VAT포함)에 현금판매 - 세금계산서도 미발급되었으며, 부가세 신고 누락되었음

<매입누락>
비품카드매입건 1,100,000(VAT포함)

<가산세> 미납일수 30일 가정(년 365일 가정) 미발급 : 2,000,000 x 2% = 40,000 신고불성실 : 100,000 x 10% x 50% = 5,000 납부불성실 : 100,000 x 0.03% x 30 = 900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예제]

회사코드 (주)본인이름 환경등록 : 매출-404제품매출, 매입-153원재료

[1] 다음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와 과세표준명세는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하시오.(6점)

구분	내 역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80,000,000원	38,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77,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0,000,000원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일반매입)	250,000,000원	25,000,000원	접대비관련 공급가액 10,000,000원(VAT 별도)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10,000,000원	1,000,000원	기계장치 매입(고정자산매입)
	현금영수증 수취	500,000원	50,000원	소모품 구입건

[답]

	금액	세액
1번	380,000,000	38,000,000
3번	70,000,000	7,000,000
5번	50,000,000	0
10번	250,000,000	25,000,000
16번->49번	10,000,000	1,000,000 (불공제분)
11번	10,000,000	1,000,000
14번->40번	500,000	50,000

[2] 다음은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기간(2017.4.1.~2017.6.30.)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반영하여 201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기존자료는 삭제하고 아래 자료의 내용으로 입력하시오)(6점)

(1)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2,200,0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원재료를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공급가액 : 30,000,000원).
(3)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0,000원이다.
(4) 현금매출로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다.
(5)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 1억원
- 이자율 : 2.5%/년
- 대상기간일수 : 91일
- 당해연도 총 일수 : 365일
-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

(6) 업무용 소모품을 법인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예정신고시 누락되었다.

[답]

1) 8번 세액 –200,000
2) 5번 금액 30,000,000
3) 6번 금액 24,000,000
4) 4번 금액 5,000,000 세액 500,000
5) 4번 금액 623,287 세액 62,328
6) 12번 -> 38번 아래 신용카드매출수령금액합계 일반매입 금액500,000 세액 50,000

[3] 다음은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기간에 대한 관련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반영하여 201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부동산임대업과 수출입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아래 자료의 내용으로 직접 입력하시오)(7점)

(1)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1,540,000원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상에서 확인된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하면 24,000,000원이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400,000,000원, 세액은 40,000,000원이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240,000,000원, 세액은 24,000,000원이다.(일반매입건임)
(5) 카드매출로 7,700,000원, 현금영수증 매출로 2,200,000원, 현금매출로 220,000원이 발생하였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6) 임대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800,000원
(7) 예정신고미환급세액 400,000원이 있다.

[답]
1) 8번 세액 –140,000
2) 6번 금액 24,000,000
3) 1번 금액 400,000,000 세액 40,000,000
4) 10번 금액 240,000,000 세액 24,000,000
5) 3번 금액 9,000,000 세액 900,000
4번 금액 200,000 세액 20,000
6) 4번 금액 800,000 세액 80,000
7) 21번 400,000

[4] 기존의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세부담 최소화 가정).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명세 등 기타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7점)

매출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세매출액 : 400,000,000원(500매, 부가가치세 별도) 2] 신용카드 매출액 :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직수출액 : 200,000,000원 4] 201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22,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였다.
매입자료	5] 세금계산서 매입액 : 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 매입액 중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과세상품구입과 관련한 매입액이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포함되어 있다. 6] 2기 예정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 매입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된세액 : 1,000,000원

[답]
1] 1번 400,000,000/40,000,000
2] 3번 60,000,000 / 6,000,000
3] 6번 200,000,000
4] 8번 2,000,000
5] 10번 530,000,000 / 53,000,000 (토지관련 매입은 일반매입으로 입력 또는 고정자산매입으로 입력 모두 가능)
16번 -> 49번 30,000,000/3,000,000(불공제분 반영)
6] 12번 -> 37번 10,000,000/1,000,000
7] 21번 1,00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53번 10,000 입력

[5] 다음은 (주)청용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다음의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부당 과소신고 해당 안 됨). 2017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예정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92일로 한다)(7점)

구 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매출	10,000,000원	1,000,000원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나 신고기한 내에 미전송하였고 예정신고서에 누락함)	3,000,000원	-
직수출 매출	5,000,000원	-

[답]
7번 -> 33번 10,000,000 / 1,000,000
34번 3,000,000
35번 5,000,000

<가산세 25번>
64번 미전송
69번 신고불성실
71번 납부불성실
72번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6] (주)세종기업의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산데이터에 의해 반영되는 자료는 그대로 두고, 아래의 자료만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다.(부당과소신고가 아니며, 예정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시 미납일수는 90일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을 적용한다)(7점)

누 락 내 용	금 액	비 고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3,300,000원	공급대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금액	1,000,000원	시가
직수출 매출	5,000,000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운반비 매입	5,000,000원	공급가액

[답]
7번 -> 33번 4,000,000 / 400,000
35번 5,000,000
12번 -> 37번 5,000,000 / 0
전자신고세액공제 53번 10,000 입력

<가산세25번>
69번 신고불성실
71번 납부불성실
72번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 (주)소망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7.10.1.~12.31.)를 하려고 한다. 다음의 사항과 가산세(부당과소신고는 아님)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과소납부경과일수는 91일로 한다.(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불러올 때 자동으로 반영되는 자료를 이용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한다)(9점)

예정신고 누락내용	・신용카드 매출(공급대가 55,000,000원) ・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증명서(공급가액 20,000,000원) ・영업부서의 2,000CC 승용차(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 세금계산서 매입
제2기 확정신고시 기타 사항	・전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3,300,000원을 회수하였다. ・2017년 제2기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 400,000원이 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직접 이행함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한다.

[답]
33번 50,000,000/5,000,000
35번 20,000,000
37번 20,000,000/2,000,000 -> 불공제분 16번 -> 49번 20,000,000/2,000,000
8번 300,000
21번 400,000
53번 1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가산세25번>
69번 신고불성실
71번 납부불성실
72번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8]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2017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2기 확정 과세기간의 거래는 주어진 자료 뿐이라고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 및 매입매출전표의 수정・입력은 생략한다.(7점)

・예정신고시 누락분
- 직수출 30,000,000원(부정행위 아님)
-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업용신용카드 일반매입분 5,500,000원(공급대가) 누락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사항
- 세금계산서 매출액 15,000,000원(공급가액)
  → 세금계산서 매출분 중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 세금계산서 매입액 10,000,000원(공급가액) : 고정자산매입분 없음
  → 매입세금계산서 중 접대비 해당분 3,000,000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답]
35번 30,000,000
38번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금액합계 -> 일반매입 5,000,000/500,000
1번 15,000,000/1500,000
10번 10,000,000/1,000,000
16번 -> 49번 3,000,000/300,000
<가산세25번>
62번 미발급
72번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 예정누락분 매입전표 입력 후 부가세신고서 자동반영 >>
=> 전표입력 후 상단메뉴 중 [간편집계및기타] ➡ [예정누락분] 선택
=> 확정신고 개시년월 입력
=> 부가세신고서 자동 반영됨

[1]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다음 내용이 누락되었다.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예정신고누락분을 전표입력(분개는 생략한다)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거래처 입력 및 분개 생략함)

1. 거래일자 3월 10일 **제품 현금 매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전송했으나 부가세 신고 누락되었다.** **• 공급가액 : 1,000,000원(VAT 별도) • 공급받는자 : 제이엠** **2. 거래일자 3월 20일** **3월분 공장 건물의 임차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신고 누락되었다.** **• 공급가액 : 1,500,000원(VAT 별도) • 공급자 : 가나빌딩**

<부가세 수정신고서 작성예제>

*** 당사는 10월 ~ 12월 과세기간 동안 아래 자료로 부가세신고를 했다고 가정함**
[아래 거래자료 전표입력 후 부가세신고서 확인 및 저장할 것]

1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 – 제품 외상 매출분 100,000,000원(VAT별도)
1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 – 건물 현금매각 건 10,000,000원(VAT별도)
(건물 취득가 2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원)

10/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 원재료 외상 매입분 50,000,000원(VAT별도)

부가세 신고서 확인 후 저장하기

[과세표준명세 확인]
27번란 100,000,000원
30번란 수입금액제외 10,000,000원 (고정자산매각 건, 간주공급건 등 반영 –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제외건)
=> 과세표준 합계액 110,000,000

[5] 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익년 1월 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내용이 발견되어 처음으로 2018년 2월 4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과세표준명세포함) - 수정신고 1차수 - 를 작성하시오. 단, 미납일수는 10일로 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마시오.

오류 사항	・11월분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 건 10,000,000원에 대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미전송되었음**) ・사업자인 (주)중고에게 제품운반용 중고트럭을 22,000,000원(부가세포함)에 현금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분이다. -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 : 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

부가세신고서 10월 ~ 12월 수정신고 1차 열기
수정신고란(오른쪽 화면)
5번 10,000,000 입력 (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분)
4번란 22,500,000/ 2,250,000 입력 (세금계산서 미발급분 + 간주공급)

과세표준명세
27번란 110,000,000원으로 수정
30번란 수입금액제외 32,500,000원으로 수정 (고정자산매각 + 간주공급분)
=> 과세표준 합계액 142,500,000 정정됨
신고년월일 2018-02-04 수정

<가산세적용>

세금계산서미발급 62번 20,000,000 x 2% = 400,000

미전송 64번 10,000,000 x 0.5% = 50,000

신고불성실 69번 2,250,000 x 10% x 50% = 112,500

납부불성실 71번 2,250,000 x 0.03% x 10 = 6,75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72번 10,000,000 x 0.5% x 50% = 25,000

* 2017 절대강자 전산세무2급 교재 백데이타 기출문제

(주)한양기업(회사코드:6520)

[1] 1기 확정신고(4월~6월)를 7월 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한 오류내용이 발견되어 처음으로 2017년 10월 23일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미납일수는 90일로 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마시오.(8점)

오류 사항	・직수출 50,000,000원에 대한 매출누락(부정행위 아님)이 발생하였다. ・비사업자인 최현에게 제품운반용 중고트럭을 22,000,000원에 현금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분이다. -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 : 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 -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용제품 제공 : 원가 1,000,000원, 시가 1,200,000원

부가세 1기 확정(4/1~6/30) 수정신고 신고차수 1차 열기

[답] ・4번 과세 기타 0 → 22,500,000 / 2,250,000 수정
트럭판매 20,000,000 + 매출처 접대 2,500,000 = 22,500,000
・6번 영세 기타 0 → 50,000,000 수정

<가산세명세>

・62번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0,000,000/400,000 수정 20,000,000 × 2% = 400,000
・69번 신고불성실가산세 : 2,250,000 / 112,500 수정
(2,000,000 + 250,000) × 10% × 50% = 112,500
・71번 납부불성실가산세 : 2,250,000 / 60,750 수정
2,250,000 × 90일 × 3/10,000 = 60,750
・72번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0,000 / 125,000 수정
50,000,000 × 5/1,000 × 50% = 125,000
・24번 가산세액계 : 698,250

㈜미남기획(회사코드:6721)

[2] 2017년 1기 확정신고(4월 ~ 6월)를 7월 25일에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내용을 발견하고 2017년 11월 10일에 1차로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음의 오류내용이 반영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미납일수는 85일로 가정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은 생략한다.(7점)

・직수출 50,000,000원에 대한 매출누락(부정행위 아님)이 발생하였다. ・사업자인 (주)감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중고기계를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현금판매한 것을 누락하였다.(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한 제품 타계정대체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제품 제조에 사용된 재화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분이다. - 매출처에 접대목적으로 제공 : 원가 3,000,000원, 시가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용 제품 제공 : 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답]

부가세신고서 4월 ~ 6월 수정신고 1차 열기

· 과세 기타4번란 0 → 16,500,000 / 1,650,000 수정

기계판매 12,000,000 + 매출처 접대 4,500,000 = 16,500,000

· 영세 기타 6번란 0 → 50,000,000 수정

* 가산세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62번란 12,000,000 × 2% = 240,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69번란 → 1,650,000 / 82,500 수정

(1,200,000 + 450,000) × 10% × 50% = 82,500

· 납부불성실 가산세 71번란 → 1,650,000 / 42,075 수정

(1,200,000 + 450,000) × 85일 × 3/10,000 = 42,075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72번란 → 50,000,000 / 125,000 수정

50,000,000 × 5/1000 × 50% = 125,000

· 가산세액 합계 → 489,575

㈜대흥(회사코드:6920) : <u>백데이타 오류로 부가세 2기확정 신고서 저장 후 수정신고서 조회하여 작성할 것</u>

[1] ㈜대흥은 2017년 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8년 2월 28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1차)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서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 아니며, 기존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한다.(7점)

가정	·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류 내용에 대한 전표입력은 생략한다. · 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 아래 오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없으며, 각종 세액공제는 모두 생략한다.
오류사항	· 10월 1일 ㈜영동상사에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건에 대한 국세청 전송을 누락하여 2017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 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원재료 판매처는 일반과세자이다) · ㈜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1건을 누락하였다.

[답]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조회기간 : 2017년 10월 1일~12월 31일 수정신고 1차 열기

수정신고 1번란 세금계산서발급분 305,000,000 / 30,500,000 수정

10번란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281,000,000 / 28,100,000 수정

14번란 그밖의 공제매입세액 일반매입 3,000,000 / 300,000 수정

<가산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 5,000,000 x 1% = 50,000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 x 10% x 50% = 5,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 x 0.03% x 30일 = 900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 가산세 적용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적용 배제됨(개정세법).